

인권정보자료실
AY1.3

군의문사 실태와 군제도 개선 관련 자료집

2004. 1.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2층 110-755
전화 : 02)3703-5975 전송 : 02)3703-5978
홈페이지 : <http://www.truthfinder.go.kr>

군의문사 실태와
군제도 개선 관련 자료집

2004. 1

인권정보자료실
AY1.3
제작

**군의문사 실태와
군제도 개선 관련 자료집**

2004. 1.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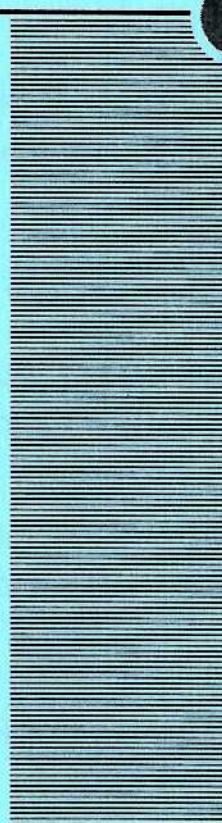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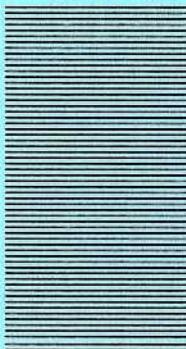
목 차

제1부	군의문사 실태와 개선 방안 / 3
제1장	군의문사 현황과 개선방안 / 이철학 5
제2장	군내 사망·폭행사고 방지를 위한 군내 구금시설 16 인권실태 개선방안 / 허상수
제3장	군내 사망사고 조사과정의 문제점과 군의문사 22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방향 / 이행규
제4장	군의문사 조사상 난점과 개선방안 / 박종덕 28
제5장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 황학수 34
제6장	군의문사와 방지대책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40
제7장	타이완 대체복무 제도 참관보고서 / 한홍구 77
제8장	돌아오지 않는 아들들 / 고상만 94
제2부	주요 기획 기사 / III
제1장	「못난 나라에 태어나 두 번 죽은 아들아」 113 (1999. 5. 25. 『시사저널』 제500호)
제2장	「‘녹화사업’을 용서할 수 있는가」 119 (2002. 7. 24. 『한겨례21』 제419호)
제3장	「군의문사, 이제는 끝내라」 126 (2002. 9. 12. 『한겨례21』 제425호)
제3부	주제별 언론기사 / 133
제1장	군의문사 실태 135
제2장	군의문사법 제정 추진경위 160
제3장	녹화사업 164
제4장	명예졸업장 173
제5장	사건별 주요내용 176
제6장	법원판례 모음기사 205

군의문사 실태와 군제도 개선 관련 자료집

제1부

군의문사 실태와 개선 방안



제1장 군의문사 현황과 개선방안¹⁾

1. 여는 말

군대내 사망사고나 자살 처리자 가족들이 사건 진상에 대한 의구심을 갖거나 수사결과에 대해 불복하고 의문을 갖는 이유는 군 수사방식에 많은 문제가 있고 군 수사당국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어버린 결과이다. 좀더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국방부에 탄원하였고 이로 인해 발족한 것이 이른바 특조단이다.

1999년 7월에 ‘민원제기 사망사고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발족하였음에도 제 사건을 진정 접수한 유가족들 중에서 재조사 도중에 재조사를 거부하고 ‘특조단’ 해체를 요구한 것은 어떠한 까닭일까.

이는 분명하게 ‘특조단’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한 사망사고 유가족들의 의문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재조사와 해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군의문사를 정의 내리고, 군내 사망사고 및 의문사 현황을 살펴본 후, 그간의 군의문사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약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군의문사의 발생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군의문사에 대한 정의²⁾

사망의 원인은 크게 자연사와 사고사로 나눌 수 있다. 사고사는 우연한 사고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을 죽이는 자살, 그리고 타인에 의하여 생명을 끊는 타살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 의문사라는 또 다른 범주가 존재한다.

군의문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타난다. ①자살로 보기에는 많은 의혹이 있는데 불구하고 군 수사기관이 과도하게 자살로 몰아가는 경우, ②강력

1) 이 글은 2003년 5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주최한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철학 신부가 발표한 글이다.

2) 2002, 국가인권위, 「군대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인용

한 타살의 근거가 제시되었는데도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조작하는 경우, ③비 과학적이고 허술한 수사과정, 보안규정 남용 등으로 의혹을 증폭시키는 경우, ④자살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부내 내 요인을 배제한 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면서 납득할만한 동기 및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군의문사란 ‘타살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사고사 및 자살사고와 군 수사기관에서 자살로 결론을 내렸으나 이를 유가족이 납득하지 못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건’을 말한다.

2. 군내 사망사고 및 의문사 현황

1) 군내 사망사고 현황

1980년부터 1995년 말까지 15년 5개월간 군에서 사망한 사람은 총 8천9백51명이다. 이중 자살처리가 3천2백63명(36.4%), 폭행치사 3백87명(4.3%)으로 연평균 5백77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전시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5년마다 1개 연대병력에 해당하는 인명의 손실이 있었던 셈이다(『한겨레신문』 1995년 9월26일자 참조).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199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군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나 총사망자 대비 자살처리 비율은 오히려 늘고 있다.(아래 표 참조)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7월	누계
사망자수(명)	359	273	248	230	182	161	85	1,538
자살처리(명)	103	92	102	101	82	66	44	590
자살처리율(%)	28.7%	33.7%	41.1%	43.9%	45.1%	41.0%	51.8%	38.4%

2) 천주교인권위원회 접수 의문사 현황 (2003년 4월 24일 현재)

① 진정 사건 유형별 통계

구 분	자 살	자살기도	사고사	질병/구타	변사/병사	계
군	72건	3건	6건	7건	1건	89건
경	8건	1건	1건	2건	1건	13건

*기타(통계에 넣지 않은 진정 사건) : 공익근무요원 투신자살 1건, 동원예비군 변사 1건.

② 접수 사건 유형별 통계

구 분	자살	자살기도	사고사	질병/구타	변사/병사	계
군	79건	7건	8건	10건	3건	107건
경	9건	1건	1건	2건	1건	14건

③ 진정 사건 사고 발생 시기별 통계

구 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계
군	1건	3건	11건	31건	43건	89건
경	0건	0건	0건	4건	9건	13건

④ 진정 사건 최근 5년간 통계(발생년도 기준)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대	2002년대	계
군	11건	10건	8건	13건	19건	61건
경	2건	2건	0건	2건	5건	11건

⑤ 진정 사건 자살처리 유형

- 총기자살 : 35건(44%)
- 의 사 : 19건(24%)
- 추 락 사 : 14건(17%)
- 기타(수류탄자폭, 동맥절단, 의사, 질식사, 가스중독) : 12건(15%)

3) 군의문사 개관

군의문사 사건이 우리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 것은 80년대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에 의한 군의문사 사건을 제외하면 1998년 2월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발생한 김 훈 중위 사망사건부터이다. ‘국회 진상규명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언론을 통해 사망사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군의문사 유가족들은 그동안 가슴속에 고이 묻어두었던 의혹을 국방부 민원조사과를 통해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김 훈 중위 사건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는 1998년 12월9일 군검찰, 합조단, 기무사, 정보사, 국정원과 민간검찰 수사요원 등 68명으로 ‘국방부 특별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재조사를 하였고 99년 4월 ‘JSA 김 훈 중위 사망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방부 특별 합동조사단’은 최초에 자살로 발표한 내용을 다시금 확인하는데 지나지 않았고 현재 이 사건은 사법부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김 훈 중위 사건의 처리과정을 지켜보던 다른 군의문사 유가족들은 형평성을 제기하고 모든 군의문사 사건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재조사를 요청하였다. 마침내 이러한 요구가 수렴되어 99년 2월 국방부에 ‘의문사 처리과’를 신설하고 각 군은 참모총장 책임 하에 재조사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 및 운용을 골자로 하는 ‘80년 이후 군의문사 관련 민원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게 되었다.(국방부, 민원제기 사망사고 조사결과보고서) 그러다가 99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2000년 3월 31일까지 민원을 접수받아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99년 7월에는 재조사 업무의 효율성 및 조직의 전문성을 재고하고 각 군에 대한 지도와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법무관리관실 예하의 의문사처리과를 별도의 독립기구인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으로 개편하였다.

‘민원제기 사망사고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재조사 기본원칙과 절차에 대해 ① 유가족의 고충이해와 국방개혁 차원에서 철저한 재조사를 통하여 진실규명 ② 사건별 전담 조사반 편성으로 조사 실명제 실시 ③법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유가족 요구 수용 ④유가족(대리인), 유가족이 선임한 변호사, 자문위원 등의 수사기록 열람 및 현장접근 보장 ⑤유가족 측에서 제시한 각종자료 재조사에 적극 반영 · 검증 ⑥필요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군 이외의 전문기관 활용 ⑦유가족(대리인)이 요구 시 자문위원, 언론인 등 참가 하에 조사 설명회 또는 공개토론회 실시 등을 밝힌 바 있다.(민원제기 사망사고 3차 조사결과, 국방부 특별조사단 2000. 12. 21)

그러나 사건별 재조사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최초의 수사기록에서의 축소, 은폐, 조작, 수사결합 등의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기존 수사기록에서의 해석상의 차이로 순직처리를 하여 유가족의 불만을 달래

는데 그치고 있다. 이는 실제 사건을 진정 접수한 유가족들 중에서 재조사 도중에 재조사를 거부하고 특조단 해체를 요구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특조단의 활동성과로 ①유가족 민원 및 군의문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 해소 ②재조사결과 상당수 사건의 순직처리 및 명예회복 ③사망사고 예방활동 활성화로 군내 사망사고 감소 ④군복무 중 자살자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 마련을 들고 있다.

그러나 특조단의 재조사는 조사단이 군 관계자들로만 구성돼 있고 전역한 참고인의 진술을 강제할 수 없어 유족들의 의문을 풀기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점, 철저한 재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한 특조단이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만 가졌을 뿐 수사에 있어서 구인권이나 강제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 설사 수사에서 어떤 의혹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사할 수 있는 방법과 권한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조사에 불과했다는 것이 유가족 및 관련 단체의 주된 평가다. 유가족들은 특조단의 재조사는 기존의 수사 결과를 다시 한 번 인정해 주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군의문사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4) 군의문사 발생원인

가. 군 수사의 근본적인 한계

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수사권한은 전적으로 군이 가진다. 수사의 대상인 군이 스스로 수사의 주체가 되고 있는 형국이다. 어찌 보면 타당한 논리지만, 군 조직이 갖는 폐쇄성과 폭력성, 명예를 앞세우는 군 특유의 보신주의, 지휘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군검찰권,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고려한다면 이는 군수사의 근본적인 한계성을 반증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것이 수사권한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였던 것처럼 군의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포천 농협 강도 사건이나 구리 임모 하사 총기 · 탄약 반출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반향

을 일으킨 일련의 사건들을 돌아보더라도 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사실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 자정능력이 없음을 만천하에 알린 것이다. 유가족들이 군 수사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는 주요 요인이다.

나. 천편일률적인 자살동기

자살로 발표된 군의문사 사건들 대부분이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사건이며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다. 그러나 군은 이 사건들에 대해 타살의 혐의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자살이라고 판정을 내렸다. 군이 꼽은 자살의 원인들은 주로 내성적인 성격, 군복무 부적응, 불우한 가정환경, 여자친구의 변심 등이다. 수사기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그 원인들을 뒷받침하는 부대 내 주변 인물들의 진술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수사기록이 그리는 사망자의 모습이 대부분 유가족이나 친지들이 알고 있는 생전의 모습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데 있다. 심한 경우 허위사실이 버젓이 가공되어 수사기록에 올라 있기도 하다.

게다가 군이 말하는 자살의 원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사망자가 못나고 나약해서 발생한 일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군은 죽음에 하등의 책임이 없다는 얘기다. 수사기록에 부대관리나 사병관리의 문제, 구타나 가혹행위, 따돌림 등이 죽음의 일차적인 원인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사실상 전무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가족들이 수사결과를 믿지 않고, 수사의 목적이 진상을 밝히는 데 있다기보다 군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다. 현장 훼손

현장보존은 범죄현장에 남아있는 수사자료 및 증거를 보존하여 과학적으로 진상을 밝히기 위한 절차다. 따라서 현장을 가능한 한 발견 당시의 모습으로 일정기간 보존하는 것이 필수다. 그러나 군의문사 사건들의 경우 이러한 상식은 통용되지 않았다. 현장에 대한 정리정돈은 기본이고, 물 청소, 사체 이동, 폐복

세탁, 증거물 소각 등 비상식적인 일들이 자행됐다. 또 현병대 수사관들은 감식 작업에 태만하거나 무지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유가족들의 의혹을 증폭시키는 데 한몫을 했다.

바야흐로 감식작업과 과학수사의 궁극을 보여주는 ‘본 컬렉터’같은 영화나 ‘CSI과학수사대’ 같은 드라마가 대중에게 선보이고 있는 시대다. 이러한 판국에 유가족들의 눈에 보여지는 군의 구태의연한 모습들은 명백히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현장이 훼손되고 감식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제대로 된 수사결과가 나올 리는 만무하다. 이런 가운데 현병대 수사관들이 오로지 집중하는 진술서 작성을 통한 수사방법은 그 결과 나오는 진술들의 천편일률성 만큼이나 유가족들의 의혹을 강한 확신으로 만들고 있다.

라. 부검절차의 한계

사인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부검은 자·타살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진행되는 필수적인 절차다. 그러나 군의문사에 있어서 부검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검의의 소견이 사실상 수사결론이 된다는 점에 있다. 자·타살 여부는 부검의의 소견만이 아니라 사망자의 건강, 주변관계 등 인적사항은 물론 현장 상황 등에 대한 내사결과를 종합해서 내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군의문사의 경우 여러 가지 참고자료의 하나가 되어야 할 부검결과가 수사관들의 무능과 한계를 보완하는 전가의 보도로 이용되며 수사결론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군과 법의학자들의 부적절한 유착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법의학자들은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절대 군 조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신분이라는 것이다. 또 현행 부검절차는 직접적인 사인 못지 않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과관계가 중요시되는 군의문사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구타나 가혹행위는 없었는지, 업무상 발병은 없었는지 면밀히 밝혀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전신 엑스레이 촬영은 필수인데, 총상인 경우에도 탄도 관측을 위한 엑스레이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마. 보안규정의 남용

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가족들은 군사시설보호법상 해당 부대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현장에 들어갈 수 있으며, 군사시설보호법 제8조에 의해 군사 시설의 촬영·묘사·녹취를 금지 당하고 있다. 그러나 TV화면에 예사로 비춰지는 화장실·취사장·식당·내무반·휴게실 등에서까지 촬영이나 묘사를 막고 기밀과 무관한 사건관련 진술에 대한 녹취를 막으며, 사건의 이해를 위해 확인이 필수적인 기본문서자료에 대한 접근마저 제한하는 현병대의 모습에서 유가족들은 군이 사건의 축소와 은폐, 면피에 급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사종결 후 유가족이 원하면 언제든지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접근의 불편함 여부를 떠나 과연 모든 기록이 온전하게 보존되고 공개되겠는가 하는 문제에 회의적이다. 일단 군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내려지면,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이 직접 나서서 증명을 해야 하는 현 구조 속에서 사건자료 일체를 사실상 군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은 부당한 일일 수밖에 없다.

5) 군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가. 특별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전담조사국 설치

군 당국에 대한 불신이 극도에 달해 있는 현 구조 속에서 군의문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군의문사 사건에 대해서는 독립된 특별검사로 하여금 재수사를 하고 기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군의문사 문제만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특별검사로 하여금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발생하는 군내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담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관련 법령을 개정, 전담조사국을 설치하고 전문조사요원을 충원하며 합당한 권한을 부여해 향후 군내 인권을 보호하고 수호하는 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발상의 전환

군 복무 중 자살한 병사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이들은 비전투 손실로 취급되며 군의 전투력과 사기를 약화시키는 반국가적인 범죄자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기본적으로 징병제도를 통해 엄격히 선발된 사람이며, 직무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업무수행 외에는 안전하게 복무할 권리가 있었던 사람이다. 따라서 군 생활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모든 종류의 사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고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귀찮은 존재, 시비를 거는 존재로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 유가족들은 사망사건에 대한 의혹 및 책임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의혹을 풀어줄 의무가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기존의 “자살을 하고도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자식교육을 올바로 시키지 않아서 자살한 것 아니냐?”라는 식의 접근은 지양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을 외치며 사체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유가족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유골을 임시 안치할 수 있는 합동봉안소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희생자들을 위한 묘역 조성과 유가족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다. 군 수사방식의 개선

초동수사 강화가 필수다. ①사망사고의 경우 현장 보존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 수사관 및 일반 장병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진술에 의존하는 현 수사 관행을 탈피하고 면밀한 감식 작업과 정밀 부검 등 과학적인 수사를 지향해야 한다. 현병대 수사관들의 자질 향상 및 장비 확충은 필수다. ③군의문사의 특수성을 고려 수사과정 및 부검에 있어서 죽음에 이르기 까지 인과관계를 파헤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④보안규정을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적용, 각종 정보에 대한 유가족의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이나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⑤군내 사망사고 발생시 유족이 의혹을 제기할 경우 초동수사 단계부터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3자-국가인권위원회, 인권시민단체-의 조사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⑥의혹이

제기되는 군내 사망사고의 경우 유가족 요청시 모든 기록은 수사결과 발표 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제도 개선

장기적으로는 군형법과 군사법원법 등 군의문사 양산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군사법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군사법원법상 군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 폐지, 군형법상의 범죄가 아닌 일반범죄에 대한 재판권 할권의 민간 이양 등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연구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제도 하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가령 사망사고와 같은 특수한 경우 군 검찰과 일반검찰이 합동수사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변사보고 즉시 일반 검찰과 함께 검시 및 현장 감식 등 초동수사에서부터 일반검찰과 함께 수사를 하도록 하면 상당한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행 유가족에게 전가되어 있는 입증책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자살이 아님을 유가족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이라면 제도적 강자인 군과 국가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맷음말

과거 군사정권 시대에 군은 민간인이 결코 접근할 수 없는 성역이었으며, 여타의 군 문제들은 외부와는 철저하게 분리된 채로 처리되어 왔다. 한편 작금의 시대는 과거 군사정권 시대와는 달리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더불어 과거 사건들에 대한 진실 규명의 목소리가 드높아진 상태이다. 민주화 운동 관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미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다. 군 또한 이에 대하여 예외일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물론 군의 특성상 위계관계와 보안절차에 관한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이를 남용 혹은 악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외부와의 관계 없이 폐쇄된 성역으로 남아 고이는 물은 썩게 마련이다. 이제 군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혼신과 개방의 탄력적인 길을 걸어야 한다.

게다가 군의문사 문제는 군인이기 이전에 인격을 지닌 한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인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오늘날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회와 문화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인간의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이 은폐 혹은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제도 또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에 이르기까지 군은 어찌하여 군의문사 문제에 대한 온전한 진실 규명을 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은 여러 가지의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존중의식의 결여보다는 제도와 조직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과거 군사 정권의 잔영이 아직 군대 내에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이다.

군의문사 유가족들의 슬픔과 분노에 대하여 사려 깊게 생각해 본다면 합당한 조사와 철저한 진실 규명은 씻을 수 없는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길이며 인간의 모습을 한 민주화와 제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의 길이다.

군과 국가는 더 이상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 및 진상규명기구의 설치,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담하는 전담권의 이양 및 전담 조사국의 설치,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의 발상의 전환, 군수사방식의 개선, 제도의 개선 등이 조속한 시일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군의문사는 분명히 존재했고, 존재해 왔다. 의문을 일으키는 모든 죽음에 관하여 책임 있는 조사와 합리적인 결과가 나타나 유가족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때 만이 사라질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사건을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여 유가족들의 슬픔과 분노를 배가시키고 고인을 두 번 죽이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 당국과 국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바란다.

제2장 군내 사망·폭행사고 방지를 위한 군내 구금시설 인권실태 개선방안³⁾

1. 군 대

군대란 무엇인가. 감옥 등 구금시설은 무엇인가. 군대내 폭행 및 사망사고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군대의 위상과 감옥 등 구금시설을 어떤 것으로 위치를 지울 것인가에 따라 사고의 원인과 대책이 달라질 수 있다. 군대를 ‘사람이 사는 조직’인가 아니면 국토방위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는 ‘군대조직의 한 수단이나 전투자원’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문제의 진단과 해결책은 달라질 수 있다.

허버트 스페너는 콩트의 진화론에 이어 말하기를, 한 사회는 군사형 사회에서 산업형 사회로 진화한다고 보았다. 군사사회는 강제적인 협동에 바탕을 두고 조직된다. 개인의 행위에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전제적인 중앙집권적 권력을 가진 사회이다. 반면에 산업형 사회는 자발적인 협동에 바탕을 두고 조직되며 개인행위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한정된 민주적, 대표제적 정부를 가진 사회이다. 따라서 군사형 사회는 나름대로의 조직원칙과 운영원리가 존재한다.

아무리 군대 내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가 같다고 해도,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쓰는 수단이 똑같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관점도 존재할 수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폭력과 위계를 써서 사회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회는 어떤 형식으로든, 그 수단을 규정하고 폭력 행사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사회에서나 일정한 의식이 있고, 절차를 밟게 되어 있으며, 경찰권과 군대조직을 갖고 있다.

집단 내부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명령을 계통적으로 확립하여 명령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성원을 복종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명령계통을 위계적

3) 이 글은 2003년 1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군의문사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허상수 교수(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가 발표한 글이다.

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이들 사이에 대립은 존재할 수 없으며 대립이나 갈등이 존재한다면 내부질서는 문란하여 전체의 단결력은 소모된다. 이런 결점을 없애기 위하여 최고 명령자가 존재하고 모든 명령이 그로부터 발원할 때 여러 명령 사이에 모순충돌이 생기지 않고 하위자는 그에 대해서 절대적인 복종을 바치게 된다.

현대의 군대는 다음 4가지의 기본적 특성을 지닌다고 한다. ①폭력관리에 있어서 전문적이다. 군사기술의 복잡성,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되면서 군대는 무기 사용 및 통제를 전문화하였다. ②국가의 군대이다. 자신들의 주요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의 정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 이유는 군대가 세금을 통해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재정과 산업 생산을 통해 제공되는 무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자치적 공동체성이 두드러진다. 군대 나름의 고유한 운영 원리나 관습, 조직문화가 존재한다. ④군인정신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강하다. 현대의 군인정신은 협동하는 태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개인적 동기를 집단의 필요에 복종시킬 것과 명령과 훈련의 중요성이 요구된다(샤무엘 헌팅턴, 1981).

군대는 특수한 사회이다. 더욱이 군 교정시설은 군인의 의식주를 영내에서 보장하는 별도의 특수한 사회이다. 하나의 독립된 사회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인권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군대가 지녀야 할 고유한 기능과 역할, 예를 들면 국토방위를 위한 전투력의 향상과 체력 단련, 전투력 강화 등 고유기능과 역할을 중시하면서 군인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최소한의 인간권리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군인을 전투자원으로 보는 숫자 개념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군인도 인간이라는 천부적 권리를 지닌 인간존재로 볼 것인가를 가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2. 구금시설

이것은 사람들을 오랜 기간동안 외부세계와 물리적으로 격리시키는 조직이다. 그래서 외부의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격리된다. 마침내 여기에 갇힌 사람은 사회로부터 숨겨진다. 구금시설은 철저하게 폐쇄된 성격을 지니므로 다른 조직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시설들은 감시와 규칙의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즉 피수용자들의 행동을 최대한으로 통제하려고 한다. 제약을 받는 장소이다. 사고뭉치들이 수용되는 곳이다. 간수들은 죄수들을 볼 수 있지만 죄수들은 간수를 볼 수 없게 된 시설이다. 피수용자들을 독방에 가두거나 한 감방에 소수의 인원만을 수용한다는 원칙이 수용되었다(고프만, 1961, Foucault, 1979).

적대적 분출의 하나로서 린치가 있다. 법의 손길이 효과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질서를 성원들 안에서 스스로 지키려는 동기에 의하여 일어나는 일종의 공격적 성향의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한 것으로 어떤 인물을 표적으로 해치거나 파괴하려는 군중행동의 일종이다. 이것은 개인간의 폭행이나 구타와 다르다. 군대 내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폭력사고는 이런 린치 발생 상황과 유사한 발생구조가 있다. 폭력을 묵인하고 은폐하고 방조하는 조직 특유의 하위문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특유의 조직문화는 조직 리더나 부서장의 성격 또는 인격, 조직 성원의 사회화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것은 이상행동의 빈도 발생과 일정한 관련을 맺는다. 같은 부대라고 하더라도, 같은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는 이상행동을 보이고, 누구는 그런 일탈행동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3. 원인

군 복무중 사망원인은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구타, 폭행,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개인신상문제, 혹은 군 복무에 대한 불만이 동기가 되어 일어나는 자살 등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망을 보통 군대 내에서는 군기사고로 일괄하여 묶고 있는데 이런 분류가 타당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천주교인권위 보고서, 2002, 183).

다른 경우도 그렇지만 군대내 폭행 및 사망 사건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해석, 설명이 없이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대개의 경우 사건을 일단 무마하기 위해서 원인 규명이 없이 사건 해결에 접근할 경우 제2, 제3의 동일 사건이 재발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건의 원인이 역사적인 것인가, 사

회구조적인 것인가, 군 내부문제인가, 사적 문제인가를 구별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시적이고 구조적 원인에 의한 폭력 행사의 경우에는 대책 마련도 사회적인 테서 찾아야 한다.

군대 내에서, 특히 군 교정시설에서의 폭력의 발생을 해당 군인의 공격성이나 개인적 문제로 환원하는 식의 접근은 문제 해결을 가로막을 수 있다. 폭력사고의 발생원인은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 원인, 집단내의 고유한 문화, 관습, 관행에 의한 것일 수가 적지 않다.

예컨대 가해자와 피해자, 지휘책임을 물어 상급자에게까지 문책하는 데서 비롯된 집단책임주의는 관련사고의 처리에서 비밀주의를 낳게 되고 결국 사건이 봉합, 무마되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이것은 사전예방이나 사후관리에 매우 좋지 않은 악영향을 주고 만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4. 대안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체계적으로 주지시키고 이해시켜야 한다.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율성과 자기결단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강압적인 방식이나 물리적 대응은 반발과 반항심만 조장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규칙이나 규범을 강조할 때에는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이유와 배경, 준수사항의 이행시 얻게 될 효과와 이득을 납득시켜야 한다.

- 1) 예방은 최선의 방책이다. 예방과 방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2) 폭력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일으킨다. 아무리 작은 폭력행위일지라도 급격한 행동 이후에 작든, 크든 정신적, 물리적, 경제적, 조직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일시적 흥분이나 격정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회성원들에게 다소간의 심리적 위축에서부터 엄청난 가시적 손해가 남겨질 가능성이 엄청나다는 점을 사례를 들어 생생하게 숙지시켜야 한다.

- 3) 폭력은 갈등, 대립, 분규, 분노 해결의 최악의 방법이다.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은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이다. 대화는 서로의 같음과 비슷함, 차이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상호작용이다.
- 4) 폭력의 원인에 대하여 가해자나 피해자로 하여금 말로 이야기하게 만든다. 쌍방은 말을 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주장이나 요구를 드러나게 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다. 자기 혼자 일정 장소에서 소리를 치게 하거나 독백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이런 해결책의 한 방법이다.
- 5) 제3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말하게 한다. 제3자는 그녀나 그의 진술을 듣고 지지, 반대, 수긍, 부정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돌아보게 만들어 준다. 현재의 군 조직구조나 체계상 이들의 고충을 들어 줄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군 편제에 존재하는 중개위원과 같은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력이면 될 것이다.
- 6) 폭력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글로 쓰게 한다. 글을 쓰게 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나 주의, 주장에 대하여 명료한 생각을 갖게 만들고, 제 3 자가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5. 제도적 대안

- 1) 군대내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제도적 접근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군대도 사람이 사는 조직이라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오히려 이런 접근이 군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급자는 이해하여야 한다. 인권교육은 시간과 인력과 자원의 낭비가 아니라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람들간의 거리를 좁히며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 2) 구금시설의 관리자나 담당자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기존의 관행이나 천편일률적인 대응으로는 폭력 발생의 원인 규명이나 효과적인 대안 마련을 어렵게 한다. 이들에 대한 재교육은 효율적인 인권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경로이다.

- 3) 민간 전문가의 활용과 상담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군 구금시설에 피구금자의 일상적 애로사항이나 문제를 전달받고 해결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피구금자들은 자신이 ‘억울하며, 외롭고, 운수가 나쁜 경우’라고 자포자기하기 쉽다. 이들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방법과 수단과 도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사소한 행위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뒤에 더 엄청난 범죄행위의 반복으로 나타나지 않게 선도하고, 교화하며, 교정해야 하는 일은 사회의 뜻이며 국가의 새로운 의무요 책임일 수 있다. 그리고 효과적인 교정 사례 등을 회람시켜 유사사건의 재발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나 선도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4) 폭력이나 군기 사고의 발생은 어느 정도 예고되거나 사전 감지 상태임을 직시하고 경고나 신고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어떤 사고도 갑자기 일어나는 법은 없다. 무엇인가 변화와 행동의 조짐이 관찰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용의주도한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5) 고충처리나 소원수리와 같은 방식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기본권,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법제의 도입과 윤용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예컨대 적절 병과 배치 청구권의 인정, 전문적 정신상담 청구권, 근무지 재배치 청구권, 군인의 안전권, 청원권 또는 공식적 절차를 통한 이의 제기권 등이 있다.
- 6) 피구금시설의 조명을 밝게 하거나 수용면적을 여유가 있게 제공하거나 수형자들끼리 최소한의 의사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등의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독서시설의 이용이나 문화접촉의 기회를 증대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체육활동은 가장 좋은 사례의 하나이다.
- 7) 가족과의 접촉 기회를 늘리고 이들에 의한 개과천선의 길을 수용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가장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호소와 애정은 피구금자의 얼어붙은 심성을 개방하고 자신이 이들과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절친한 고향친구나 학교 동기생들도 비슷한 역할을 행사할 수 있다.

제3장 군내 사망사고 조사과정의 문제점과 군의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방향 4)

1. 군내 사망사고의 조사과정 개괄

군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대체로 사건발생부대의 사건조사절차, 각군 본부 인사참모부의 사망구분절차, 각 군의 영현절차, 국가보훈처의 보훈수혜결정절차 등을 거치게 된다. 군인의 사망사고 또는 군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민간과 마찬가지로 군검찰관이 ‘검시’를 실시한다. 검시를 거쳐 사인이 명백하고 그 사인에 대하여 유족이 수긍하는 경우에는 사인규명, 유족인도의 절차로 사망사고 조사가 종결되게 되나, 사인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인에 대하여 유족이 수긍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족 동의 하에 부검을 거쳐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게 된다.

그런데 군인의 사망사고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수사의 단서가 됨과 동시에 부대의 인력관리 측면에서 전투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중대한 사건으로서 취급 된다는 점이 특색이다. 이러한 전투력 관리의 측면에서 국방부전사상자처리규정 제5조 제1항은 “소속부대의 장은 사망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24시간 내에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전문 보고한 후 7일 내에 사망확인조서에 사망진단(시체검안)서를 첨부하여 서면보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방부 규정에 따라 사망사고를 조사하는 군 수사기관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24시간 이내) 사망원인을 비롯한 결론을 1차적으로 도출하여야 하고, 적어도 7일 이내에는 소속부대장으로 하여금 소속 군 참모총장에 대한 서면보고가 가능하도록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망확인조서에는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보훈수혜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기치는 사망원인과 사망구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4) 이 글은 2003년 5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천주교 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행규 변호사(민변)가 발표한 글이다.

2. 조사과정의 문제점

1) 조사의 공정성 문제

군대에서는 사망사고와 같은 중요사건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사건에 있어서 당해 지휘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현병이 1차적으로 초동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부대장에게 지휘보고 한다. 이러한 지휘보고시 사실상 당해 사건의 처리방향 및 관련자의 처벌수위(구속 여부를 비롯한 형사처벌 또는 징계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지휘관은 자기 휘하에 있는 부대에서 발생한 사건이 자신의 진급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를 축소, 은폐하고자 하는 유혹을 떨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휘관 자체가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더욱 그러하다.

민간 검찰에 상응하는 군검찰 또한 소속 지휘관의 지휘에 복종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공정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책임있는 당사자가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며 수사를 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왜곡된 군사법체계로 인한 구조적인 불공정에 비추어 볼 때 유족들이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해당부대의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군수사의 근본적인 한계라고 지적하고 있는 발제자의 견해는 전적으로 옳다고 본다.

2) 조사능력의 문제

군내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현병대에서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 군대의 현병은 군 사법경찰관리로서 민간의 경찰과 대응되는 수사기관이다. 현병인력은 장교의 경우 대체로 사관학교 또는 학사장교 출신 인력으로, 실질적인 수사를 담당하는 부사관(준사관 포함)은 대체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부사관과정을 마친 인력으로 구성되고, 의무복무를 위해 징집된 병사들 중 차출되어 소정의 별도 교육을 받은 병사들이 피의자 호송, 영창관리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병의 인적구성, 인력충원 절차 및 보수교육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인이 불명확한 사망사고를 조사·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성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군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사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과학수사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혈흔·머리카락 등에 대한 유전자감식 등 전문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한편 군내 사망사고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의사와 총기사의 경우 자·타살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고도의 법의학적 지식이 요구되나, 군내 사망사고 발생시 부검을 담당하는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가 민간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3) 조사시간의 문제

위와 같은 조사능력과 전문기관의 부재와 함께 군내 사망사고의 조사에 있어서 심각한 것은 조사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사고 발생하면 일단 24시간 이내에 사망원인과 사망구분을 (잠정적으로나마) 결론지은 보고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제약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현병으로서는 12~18시간 동안에 일응의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군 조직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내려진 '잠정적' 결론이 결국 7일 내의 서면보고상의 결론 또는 최종결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검찰관의 검시 또는 부검절차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병의 사망확인조서 내용이 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보훈혜택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그 내용이 충분한 조사와 심사숙고 끝에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현재와 같은 촉박한 조사기간은 큰 문제이다.

4) 군의 폐쇄성으로 인한 진실발견의 의지 부재 문제

위와 같은 문제와 더불어 사망사고를 조사하는 기관 또는 해당 부대에 사인, 특히 사망동기를 명확히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특히 자살의 경우 자살동기를 파헤치다 보면 부대내의 경직되고 강압적인 분위기, 관

행적인 폭행, 억압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책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해당 부대 지휘관으로서는 사망의 원인 또는 책임을 당사자의 개인적인 책임으로 돌리려는 분위기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문제를 야기한 사람이나 부대원들이, 조직과 부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을 다물어 버린다면 자살의 동기를 정확히 밝혀내기란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군 수사기관의 조사에 있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사명감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군 수사기관은 "애정문제 비관, 가정문제 비관, 군복무 염증"이라는 천편일률적인 사망동기 조사에서도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3. 군의문사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검토

1) 군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군내 사망사고 처리에 관한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비롯된 군의문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발제자의 주장과 같이 군의문사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간 군의문사에 대한 재조사가 십수년을 거쳐 수 차례 기구를 바꾸어 가면서 이루어졌음에도 그 유족들이 여전히 그 수사나 조사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상황하에서 또 다시 군에서 재조사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독립적인 조사권을 가진 제3의 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민간에서의 특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충격요법에 의해서만이 군내 사망사고 조사와 관련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될 수 있다.

2) 군사법제도의 개혁

군사법제도의 개혁이 현재의 군의문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장래의 군의문사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묘안이라고 생각지는 않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현병을 비롯한 군검찰과 같은 군내 수사기관이 모두 지휘권에 복속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소신있는 수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군사법제도의 구조가 유족들의 불신의 온상이 되고 있는 만큼 특히 군검찰을 지휘관으로부터 제도적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군사법원법으로 통합되어 있는 군사법원과 군검찰을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독립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현병에 대한 견제 및 실질적인 수사지휘권 확보를 위한 조치도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군검찰 스스로 내부적인 정화노력과 군내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군내 상시적인 조사위원회의 설치 등

군의문사해결을 위한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한시법이고, 과거에 발생한 군의문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군의문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장래에 현재의 군의문사 문제와 같은 불행한 일들이 재발되어서 안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군내 사망사고 처리와 관련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군의문사 문제의 핵심은 조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이므로 현재 해당 부대장(사단장, 함대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사망사고 처리에 관한 조사 및 처분 권한을 제도적으로 이양시킬 필요가 있다. 즉 국방부 직할 내지 각 군 본부 직할의 군내 사망사고 조사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설치하여 사망사고 발생부대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게 하고 관계자에 대한 처분권한도 차상급부대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 해당부대 군검찰 및 현병은 현장보존 정도의 임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특조단과 마찬가지로 법령의 개정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장관의 의지만 있다면 편제의 개편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군내 사망사고 조사위원회에 발제자가 말씀하신 국가인원위원회 군내사망사고 조사국 요원들이 위원으로 함께 참여하여 조직구성과 실제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조사위원회 조사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및 조사능력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4) 군내 인권교육 강화 및 인권담당관제도의 도입

군의문사 및 군내 사망사고의 경우 군의 폐쇄성이나 경직성으로 인한 군의 인권의식 부재 및 병사들의 인권 유린으로 야기되는 경우도 많다고 본다. 따라서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군내에서 이러한 교육 및 소원수리 등을 담당할 인권담당관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제4장 군의문사 조사상 난점과 개선방안⁵⁾

1. 군의문사 사건 조사현황

1) 1기 위원회 활동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군의문사 사건을 조사3과에 배정하여 지난 2001년 1월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군의문사 사건은 전체 28건이 접수되어 조사되었으나, 이중 3건은 군기관과 관련한 사회인의 의문사 사건이므로 실제 군의문사 사건은 25건이다. 25건의 사건 중 보안사 관련사건은 녹화사업 관련 6건을 비롯해 12건이고, 나머지 13건이 일반 군의문사 사건이다. 이중 기각 12건, 인정 4건, 진상규명 불능 9건으로 결론을 내며 1기 ‘위원회’ 활동을 마쳤다.

기각 사건을 검토해 보면 허원근 사건처럼 사인이 최초 군 헌병대 조사결과와 다르게 결정된 경우도 있었으며, 대부분의 사망원인이 부대내의 구타나 가혹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위원회’ 특별법의 규정에 뚜렷 그와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경우가 대부분이다.⁶⁾

2) 2기 위원회의 군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방침

2002년 12월 5일 개정된 특별법 부칙 제2조에서 진상규명불능 결정된 사건의 재조사가 결정되었으며, 대단히 제한적인 조건이긴 하나⁷⁾ 기각사건에 대한 조사재개의 길을 열어 주었다. 이에따라 2기위원회는 기각사건에 대한 이의제기를

5) 이 글은 2003년 1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군의문사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박종덕 과장(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3과장)이 발표한 글이다.

6)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제1조(목적)에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인정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불법한 행사 뿐 아니라,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도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7) 위원회 특별법 부칙은 기각사건의 조사재개의 조건을 ‘진정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새로운 증거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건으로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재적의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한 사건’이라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재접수한 결과 군의문사 사건은 총 7건이 접수 되었으며 2기위원회는 오랜 논의 과정을 거친 끝에 7건 모두에 대하여 조사재개를 결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현재 진상규명불능사건 9건과 합하여 총 16건의 군의문사 사건을 위원회 조사3과에서 조사중에 있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조사재개를 결정한 사건이 2기위원회의 재조사결과 1기와 마찬가지로 자살로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위자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의지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 군내에 염존하는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 등의 반인권적 현실에 의해 결과된 것이라면 국가가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살이라는 행위가 군내의 반인권적 현실과 구조적 폭력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는 2기 위원들의 전향적인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2기위원회에서도 관련 특별법의 규정에 뚜렷 이런 류의 군의문사 사건들을 인정결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현재 일반 군의문사 사건 해결을 위해 ‘군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자살사건의 배경과 동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 군의문사 사건의 해결과 군민주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 군의문사 사건의 조사상 난점과 개선방향

1) 사실상의 난점과 개선방향

‘위원회’는 1969년 3선개헌 이후의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군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의문사 특별법’)의 대상보다는 시기적으로 좁은 범위에 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중요 참고인이 사망하거나 기억이 분명치 않아 애를 먹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사기록이나 현장사진조차도 전혀 구할 수 없는 사건이 상당수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볼 때 해방이후 모든 군의문사 사건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 군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이하 ‘군의문사 위원회’)는 시기적인 면에서 만큼은 우리 ‘위원회’에서 겪는 어려움보다 더욱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점은 사건 발생 군부대와 사건을 조사한 군 현병대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은폐·축소·조작이다.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지금도 군부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하게되는 것이 근무일지 조작일 것이다. 더 나아가 사망사건이 구타 등과 관련되어 해당 지휘관의 문책 문제와 직결될 경우, 지휘관은 은폐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위원회 조사에서 사건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사망사건의 경우 초동수사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군 의문사 사건의 상당수는 현장이 훼손되어 있고, 객관적인 내용조차 잘못 조사된 경우가 많아 이후의 조사에서 이를 바로잡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비된다. 1기 위원회 활동 2년 중에는 이런 현실적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조사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이 사실이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축적하게 된 ‘위원회’의 소중한 경험들이 어떻게 하면 ‘군의문사 위원회’에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2) 제도상의 한계

‘군의문사 특별법’의 내용은 우리 위원회의 근거법률인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상당 정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위원회가 직면하고 있는 한계를 ‘군의문사 위원회’ 역시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우리 위원회의 조사경험 속에서 꼭 개선되었으면 하는 몇 가지 제도상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가. 조사권한의 강화

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문제와 관련하여 특검제 등을 포함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실무를 풀어 가는 입장에서야 실질적인 수사권의 보장 등 아쉬움이 느껴지는 권한의 문제가 한둘이 아니라 최소한 다음과 같은 권한은 보장되었으면 한다.

- 현행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제한되어 있는

처벌 규정이 구인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바뀌어야 한다.

- 청문회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 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기관에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⁸⁾

나. 조사기한, 조사인력, 예산의 문제

현행 6개월, 6개월로 한정되어 있는 조사기한으로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가해자들의 경우 1년만 버티면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또한 군의문사 사건의 진정건수는 과거 5공화국 기간동안 발생한 군사망자 수만도 6천3백명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충분한 조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충분한 조사인력과 예산 확보문제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다. 국가배상법의 소멸시효제도의 문제

우리 위원회 사건 중 일부 사건은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었음에도 국가배상법의 소멸시효제도로 인하여 유족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사례들이 있었다. ‘군의문사 특별법’에 국가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의 항변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라. 관련기관 비협조의 문제

우리 위원회에서의 군의문사 사건 조사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군의문사 사건의 직접 관련기관인 국방부와 기무사의 비협조일 것이다. 이들 기관은 해당자료가 군사기밀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밀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더욱 문제인 것은 외부에서는 이들 기관이 도대체 어떤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그 자료의 제목이 무엇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8) 위원회 특별법 22조 6항에서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 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들 기관은 때로는 ‘해당 자료가 없음’, ‘요구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음’ 등 상투적인 평계로 일관하든지, 온갖 구차한 변명으로 시간만 지연시킬 뿐이다. 일례로 우리 위원회는 허원근 사건과 관련하여 생산된 1기 위원회의 모든 조사기록을 한 점도 빠짐없이 국방부 특조단에 넘겨준 바 있으나, 국방부 특조단에서는 2기 위원회의 자료협조요청을 온갖 평계를 대어가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⁹⁾

이러한 관련기관의 비협조를 돌파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강화가 이루어 질 수 있기 위해서는 관련 법조문의 개정과 법적 권한강화 뿐 아니라, 포괄적인 과거청산기구로서의 권위가 담보된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새겨들어야 한다.

3. 맷는 말

군대는 권위주의적 통치의 물리적 기반이었을 뿐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도 우리사회 비민주성의 원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역사현실을 심대하게 왜곡시켜온 반공주의와 군사문화는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근원적인 적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산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질곡이라는 점에서 군의문사 사건 진상규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할 것이다.

군사문화의 부정적 효과는 구타와 가혹행위 등 폭력의 상습화, 사회화라고 할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 노동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 이르기까지 아직까지 우리사회 의 일상생활에 만연해 있는 폭력은 군사문화의 유산이라 할 것이다. 군대에 만연한

9) 국방부의 평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귀위원회에서 협조요청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신중히 검토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개 국가기관에서 상이한 결론을 내린 동일사건을 해당 1개 기관에서의 단독 재수사

(2) 특별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에 명시된 민주화 운동과 관련성이 없어 기각 결정한('02. 9.

15) 사건에 대한 조사재개 근거

(3) 노양식씨의 귀 위원회 관계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 미치는 영향

(4) 국방부 특조단의 조사에 일체 불응했던 주요 참고인 전원구에 대한 대질조사 및 거탐조사 출석 협조

아울러 진정인이 제시한 “명백한 새로운 증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타와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없이는 민주화도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

군대란 조직이 명령과 복종을 그 기본적 속성으로 한다는 사실을 십분 인정한다 하더라도, 5공화국 8년만에 6천3백93명이 죽어가고, 군에만 입대하면 같은 또래의 남자에 비해서 자살률이 25배나 되는 상황을 묻어둔 채 어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특히 병무청에서는 신체검사, 인성검사, 학력 등을 기반으로 심신양면에서 가장 우수한 정예자원을 선발하고 있으므로 자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 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군대와 관련된 20여건의 의문사를 조사하면서 군의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이 군부대 내에 상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군대란 격리 수용되어야 하는 집단이라는 인식 때문에 가장 규율이 엄격하고 통제된 사회이며 빈번하게 군폭력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일제시대와 해방이후 군사정권하의 통제문화에서 유래하는 것이고 인권을 경시하는 반인권적, 반생명적 사고의 극치라 할 것이다.

국가는 국민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안전하게 교육, 관리 할 의무가 있다. 만약 국가가 이런 의무를 게을리하여 구타나 가혹행위 및 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것이 비록 자살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순직처리하여 명예회복을 해주어야 한다.¹⁰⁾ 더구나 군의문사의 경우 군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판단 이외에 자살이라고 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입증책임의 전환법리에 따라 순직처리해 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군수사기관이 최선을 다하지 못하여 수사에 소홀한 점이 밝혀진다면 ‘자살’이라는 수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게 하여 국가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이는 군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자료는 전적으로 군 수사기관이 독점하고 있어 유족의 접근이 봉쇄되어 왔으며, 동료들에 대한 확인조사도 거의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10) 서울 행정법원 2001. 5.30. 2000구 382 판례

‘군인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자해행위로 숨지 경우에는 순직 제외사유에 해당하나 군인의 자살 행위가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써, 절망감 속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무수행과도 관련이 있어 순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제5장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의 필요성¹¹⁾

1. 머리말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만 20세가 된 남자라면 신체 검사를 받고, 거기에서 1, 2급의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되는데, 이들은 대개 대학재학 이상의 고학력자이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청년들이다.

이렇게 우리의 젊은이들이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고 간 군은 폐쇄된 공간이라는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구타나 가혹행위 등 폭력이 만연해 있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여전히 남아 있다.

군대내에서의 사망사건이 사회문제화된 것은 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에서 발생한 이른바 ‘김 훈 중위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에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대하였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빈발하였으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건은 사망경위나 동기 등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밝혀지지도 않은 채 군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조사결과 ‘자살’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었다. 이러한 군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조사결과는 유가족들의 불만과 사건에 대한 은폐, 조작, 축소의 의혹들을 가지는 동기가 되었다.

인간의 생명이란 가장 존귀한 것으로 그 죽음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권 즉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 복무중 사망한 사건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군의문사에 대하여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그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향상시키며 국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가 있는 것이다.

11) 이 글은 2003년 11월 26일 국가인권위 주최로 열린 ‘군의문사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황학수 변호사(천구교 인권위)가 발표한 글이다.

만약 군의문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한 생명과 가정의 파괴는 물론 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고조될 것이고 이로 인한 병역거부운동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유가족들이 중심이 되어 군의문사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그 해결할 방안 중 하나로써 2003. 9. 18. 군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2. 군의문사의 발생원인

지난 1980년부터 1995년 말까지 군대 내에서의 사망사고는 연평균 약 5백여건 이상 발생하여 왔다. 다행히 최근 몇 년간 사고발생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로 처리되는 비율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자살로 처리되는 사건 중 상당한 수가 유가족 등이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됨으로써 군의문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군의문사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군복무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한 군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데 그 출발점이 있다고 하겠다.

군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으로

첫째, 군검찰이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휘권과 수사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 군대내의 사망사고에 대하여 지휘관은 자신의 지휘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진실규명보다는 사건의 은폐 내지 축소를 지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둘째, 군검찰의 헌병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유명무실하여 수사(조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초동단계의 조사의 부실 및 사망동기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사건의 수사를 위해서는 초동단계의 수사가 아주 중요함에도 실제로 군대내에서의 사망사고의 경우 상당수가 현장보존이 되어 있지 않고 현장이 훼손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살을 예단하고 수사를 하며, 사망의 동기에 대한 수사도

거의 대부분 사망한 자의 개인적인 성격, 가정환경, 여자문제 등 개인적인 문제로 결론을 내려 다른 동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아예 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수사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군대 내에서의 사망 사고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하여 유가족들이 불만과 의문을 갖게 되어 군의문사의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겠다.

3.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무엇보다도 군의문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군대 내에서의 사망사고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군 수사기관의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어떠한 방법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지만, 그것은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군대 내에서의 사망사고의 조사활동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1)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군 수사기관 조사의 신뢰성 확보

군 수사기관의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군검찰의 지휘권으로부터의 독립과 실질적인 수사지휘권이 보장된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하여 군 사망사고에 대한 군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군의문사의 발생을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 군사망사고처리위원회(가칭)

군대내의 사망사고 조사에 군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유족대표,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 민간이 참여하여 함께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상설화하여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군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된다면 1차적으로 군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고, 이에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2차적으로 이 기구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해결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담조사국을 설치하여 진상규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초동단계에서부터의 참여는 여러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2차적으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제안

1) 특별법의 의의

현재 유가족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국방부에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이라 한다)에서 재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해서 재조사는 형식적인 조사에 불과해 진상을 규명하기는커녕 기준의 수사결과를 다시 한번 인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되고 있다.

이미 발생한 의문사에 대하여는 그 결과에 대하여 유족들의 불신이 극도에 달해 있다는 점 때문에 현 제도 속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군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함에 있어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의 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2) 특별법의 주요골자 및 제안

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의 설치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 하에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위원회의 조사방법

법안에서는 위원회의 조사방법으로 출석요구, 진술청취 및 진술서 제출요구, 감정의뢰,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사무국 설치 및 조사인력의 확보

법안에서는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조사 내지 수사의 전문성을 지닌 인력들의 확보가 보장되어야 한다.

라. 조사기간

법안에서는 조사기간을 6월로 하고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사건의 진상을 확실히 규명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법안의 조사기간으로 진상을 규명하는데 충분한 기간인지 의문이 드는바, 조사기간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 정보제공자의 보호

군의문사의 경우 군이라는 폐쇄된 곳에서 일어나는 점 때문에 현장조사나 기록을 통하여 진상이 규명되기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증인들의 양심선언이나 정보의 제공 등이 아주 중요하다. 만약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불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사건의 진상의 파악은 요원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바. 인적, 시적 범위

특별법에 의한 조사의 인적범위의 문제는 현역 군인들의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전투경찰, 의무경찰 등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입대한 모든 사람들의 사망사고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일어난 모든 군의문사에 대하여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사. 조사중인 사건의 공소시효 정지

공소시효는 소추가능성에 해당하는 문제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

따라서 조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정지시켜야 할 것이다.

5. 맷음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헌법상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입대하였다가 당한 의문의 죽음에 대하여 그 동안 우리는 그 진상의 규명을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이를 외면하거나 소극적인 눈으로 바라만 보아 왔다. 이제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군의문사 문제를 풀어 보려고 시도하고 있다. 물론 특별법의 제정으로 군의문사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특별법의 제정이 군의문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군의문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 개인의 죽음의 실체를 밝혀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군대 내에서의 폭력, 가혹행위를 근절시키는 등 장병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군대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선진 민주군대로, 대한민국을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로 발전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제6장 군의문사와 방지대책¹²⁾

1. 군의문사

1) 군의문사의 개념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는 의문사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문사”는 민주화 운동의 관련성이 없더라도 그 사망원인이나 사망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고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되는 죽음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군의문사”라고 말할 때에도 군사독재시절에 민주화운동 중 녹화사업 등의 명목으로 강제로 징집되어 목숨을 잃은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르기까지 군 복무 중 목숨을 잃었으나 그 사망의 원인과 경위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사건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군에서 일어나는 ‘사망의 원인과 경위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죽음’은 기원적으로 공권력의 지배와 관리의 영역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민간 부문에서보다 ‘공권력의 직·간접적 행사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군대 내에서 군인¹³⁾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각 군은 전사·순직·일반사망·변사·자살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에서는 ‘예우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한 예우가 적용되는 사망구분으로 전사와 순직을 두고 있으며, 위 법이 정한 보훈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일반사망·변사·자살의 사망구분을 두고 있다. 일반사망은 비전공사라고도 하며

12) 이 글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참조하고자 여러 자료와 내부 자료를 취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13) 현역군인 뿐만 아니라, 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은 물론, 병역법에 의하여 소집된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국방부 전공사상자처리규정 제2조).

군이 정한 일정범위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이며,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건 또는 재해발생으로 인한 사망(같은 법 제5조 제5항 단서 제1호 참고)’의 경우에는 변사로, ‘스스로 자기생명을 끊었거나 그로 인한 결과로 사망(같은 법 제5조 제5항 단서 제4호 참고)’한 경우에는 자살로 구분한다. 이러한 군의 사망구분에 의할 때 ‘의문의 죽음으로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사망’에 해당하는 것은 대체로 변사와 자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접수된 군 관련 사건 대부분은 사건 발생 당시 자살 또는 변사로 종결 처리되었던 사건이며, 육군 김 ○¹⁴⁾ 중위 사건 이후로 설치된 국방부 민원제기사망사고특별조사단(이하 국방부 특조단이라고만 한다)과 각군 본부에 설치된 비슷한 제조사기판에 1999년 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접수된 민원 역시 전체 2백33건 중 자살, 변사로 이미 구분되어 있던 사건이 각 1백33건, 29건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비롯한 위 각 기관에 제기된 진정 또는 민원의 내용 역시 자살 혹은 변사로 처리된 사망사고에 대하여 타살의 의혹이 있다거나, 사망자의 명예회복을 요구하거나, 순직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¹⁵⁾

<표 1>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접수 사건의 사망구분별 현황

구 분	계	자 살	사건사	병 사	타 살	기 타
계	24	19	1	1	2	1

* 육군 제25사단에서 복무 중 사망한 이병 김소진 사건(위원회 진정 제67호 사건)의 경우에는 실종으로 종결 처리된 후 나중에 유골이 발견되었다.

14) 이 글에 거론되는 관련자의 성명과 부대명은 사생활보호와 군사보안을 위하여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15) <표 1>과 <표 3>은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 접수사건개요』,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2.에 수록된 사건들 중 군 관련 사건을 분류한 것이고, <표 2>는 국방부·시민단체의 의문사 주장 차이를 나타낸 것이며, <표 4>와 <표 5>는 국방부 민원제기사망사고특별조사단, 『민원제기 사망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국방부, 2001.에 수록된 통계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이다.

<표 2> 국방부·민간단체 의문사 현황

구 분	의문사에 대한 입장	의문사 현황	비 고
국방부	사망사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뿐 기본적으로 의문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	98. 12. 9. 국방부내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이 구성되어, 99. 8. 현재 131명의 의문사 민원접수를 받고 있는 실정임
전군협	98년도에 구성되어 군의문사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옴	90명	
유가협	86년 창립이후부터 의문사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해옴	21명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 중
기 타		81명	유가족의 개별적인 의혹제기

<표 3> 위원회에서 조사한 군의문사사건 현황

번호	사 건 명	소 속 부대	사망년월일	비 고
1	제2호 임용준 사건	육군 제5군단	1984. 11. 2	진상규명 불능
2	제4호 이이동 사건	육군 제9탄약창	1987. 6. 15	39사단 파견, 기각
3	제5호 김두황 사건	육군 제22사단	1983. 6. 18(?)	진상규명 불능
4	제10호 이창돈 사건	육군 제17사단	1983. 5. 14	진상규명 불능
5	제12호 이진래 사건	미군 캠프헨리	1982. 1. 2	미군 카투사병, 기각
6	제17호 송종호 사건	육군 제11사단	1991. 2. 20	기각
7	제32호 허원근 사건	육군 제7사단	1984. 4. 2	기각
8	제37호 박종근 사건	육군 제50사단	1988. 8. 1	기각
9	제38호 우인수 사건	육군 제1사단	1988. 6. 24	기각
10	제39호 이윤성 사건	육군 제5사단	1983. 5. 4	인정
11	제40호 박필호 사건	육군 제26사단	1987. 3. 19	기각
12	제41호 정연관 사건	육군 제2군지사	1987. 12. 4	3군헌병대 관할, 기각
13	제42호 남현진 사건	육군 제1사단	1991. 2. 3(?)	진상규명 불능
14	제43호 박상구 사건	육군 제7탄약창	1987. 5. 11	37사단 파견, 기각
15	제44호 노철승 사건	육군수방사령부	1987. 3. 1	기각
16	제45호 이승삼 사건	육군 제36사단	1987. 3. 3	진상규명 불능
17	제46호 박성은 사건	육군 제31사단	1990. 5. 23	진상규명 불능
18	제49호 한영현 사건	육군 제7사단	1983. 7. 2	인정
19	제51호 정도준 사건	육군 제25사단	1992. 4. 24	기각

번호	사 건 명	소 속 부대	사망년월일	비 고
20	제53호 한희철 사건	육군 제5사단	1983. 12. 11	인정
21	제55호 최온순 사건	육군 제15사단	1983. 8. 14	진상규명 불능
22	제62호 정성희 사건	육군 제 5사단	1982. 7. 23	인정
23	제63호 김용권 사건	미 제2공병단	1987. 2. 20.	미군 카투사병, 불능
24	제64호 최우혁 사건	육군 제20사단	1987. 9. 8	진상규명 불능
25	제67호 김소진 사건	육군 제25사단	1987. 7. 이후	실종, 기각

<표 4> 국방부 특조단 접수 민원의 사망구분별 현황

구 分	계	순직	자살	일반사망	변사	기타
계	233	30	133	20	29	21

<표 5> 국방부 특조단 접수 민원의 민원요지별 현황

구분	계	타살의혹 제기	사건사 주 장	자살이유 불분명/ 명예회복요구	사건인정/ 순직처리	관련자처벌	기타
계	233	51	12	90	67	12	1

위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으로서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군내의 사망사고는 거의 1980년대의 이른바 녹화사업 또는 군정보부대의 프락션 등과 관련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위 '특별법'에 의하여 '위원회'가 취급하여야 하는 '좁은 의미의 의문사'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외부의 의혹이 집중되고 있는 군 자살, 변사사고 전체의 처리제도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군 의문사 사건의 발생 현황

'좁은 의미의 의문사'에 해당하는 사건이 얼마나 발생하였으며,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정확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 많아 이를 정리할 수조차 없다. 다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는 국방부를 비롯한 군 관계기관을 피진정기관

으로 하여 25건(<표 3> 참조) 정도가 접수되어 있다.

자살·변사를 포함한 군 내 사망사고에 대하여는 비교적 정확한 통계가 존재 한다. 국방부가 1999년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살로 구분된 사망사고는 연간 1백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기타 사건으로 사망한 수를 모두 포함하면 매년 3백명 안팎의 군인들이 군대 내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¹⁶⁾

이러한 사망사고 중 자살로 구분된 사망은 거의 대부분 유족들이 사망원인과 동기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살사고를 포함하여 유족 등이 사망원인 등에 의혹을 제기하는 광범위한 의문사는 2백여건 내외¹⁷⁾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 6> 군 사망사고·사건 통계(1995~1998)

구 分	계	안 전 사 고						군 기 사 고						
		소계	차량	항공	폭발	추락	의사	화재	기타	소계	자살	총기	폭행	
1995	330	222	138	9	4	20	24	3	24	108	100	·	3	5
1996	359	243	100	2	5	19	23	2	92	116	103	7	3	3
1997	273	173	83	9	11	12	21	·	37	100	92	2	3	3
1998	248	136	43	7	12	9	31	1	33	112	102	2	5	3

3) 군의문사 사건의 특수성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자행된 ‘좁은 의미의 의문사’는 폭압적인 국가권력의 강압성과 비민주성에 기인하고, 군내에서도 많은 부분 그러한 원인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특성 외에도 군내에서의 의문사는 군 조직이라는 성격상, 민간 영역에서와는 다른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다.¹⁸⁾

16) <표 6>은 국방부가 1999년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표로 구성한 것으로서, 강민구, ‘군대 내 사망사고의 현황과 문제점’, 『군대 내 사망사고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천주교인권위원회, 2000)에서 다시 인용하였다.

17) 강민구, 전계논문, 8p.

18) 군 자살사고 또는 폭행사고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군의 특수성으로 ① 명령에 의해 행동하는 집단 ② 계급을 주로 하는 집단으로서 계급별로 주어진 임무에 따라 행동하는 계급집단 ③ 사령관, 소대장 등 직책에 의해 분류되는 집단 ④ 동일한 규칙, 기준 및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 ⑤ 비교적 절대성이 요구되고 강요되는 집단 ⑥ 직업주의(occupationalism)보다 공조직주의(institutionalism)로 운

가. 징병제도와 관련한 특징

첫째 현재의 징병제도에서 비롯되는 특징으로서 군의문사는 거의 모두가 의무복무 중인 장병¹⁹⁾에게서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이 군에 갓 입대한 이등병과 일등병에게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표 7> 1996년 1군 지역 사망자의 계급별 현황

병 사	57(81.4%)	하사관	6(8.6%)	장 교	4(5.7%)	기 타	3(4.3%)
훈련병	2(2.9%)	하 사	1(1.4%)	소 위	1(1.4%)	군무원	2(2.8%)
이 병	18(25.7%)	중 사	4(5.7%)	중 위	1(1.4%)	예비군	1(1.4%)
일 병	18(25.7%)	상 사	1(1.4%)	대 위	1(1.4%)		
상 병	12(17.1%)	원 사	0(0.0%)				
병 장	7(10.0%)						

징병제라는 것은 그 자체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이며 이로 인해 국민이 스스로 원치 않아도 일정 기간 신체·정신적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는 명령·지휘 체계 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그 상태 자체에서 비롯되는 죽음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징병제의 이러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군내에서 발생하는 ‘사인 미상’의 죽음이, 많은 경우에 ‘공권력의 영역에서 발생’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따라서 그러한 죽음들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하는 ‘의문사’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영되는 조직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길진환, “군 폭행사고의 원인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김경범, “군 자살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등). 물론 이러한 점이 모두 군 조직의 특수성이지만, 이러한 특수성에 대한 논의로는 ‘군 의문사’의 특수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만큼 군 의문사의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9)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군 내 인력은 장교, 부사관, 병사(수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을 모두 포함하여 지칭할 때에는 장병(將兵), 부사관과 병사를 지칭할 때에는 사병(士兵)이라고 한다.

<표 8> 1999년 군 자살사고 발생 요인

자 살 동 기	비 율
부대관계	소 계 56%
	복무부적응 41.7%
	사적제재 9.5%
	처벌우려 4.8%
개인관계	소 계 44%
	가정환경비관 16.7%
	염세비관 14.3%
	여자관계 8.3%
신병비관	4.7%

<표 8>에서 알 수 있듯 자살사고에서 자살동기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군생활의 부적응’은 원치 않아도 군대에 오게 된다는 징병제의 특성상, 신체·기질상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표 7>에 따르면 입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련병, 이등병, 일등병이 군내 사망자의 반이 넘는다는 점은 이러한 군의문사 사건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 군 조직의 경직성과 강압적인 군대문화

일정 정도 첫 번째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군 조직은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상당히 경직된 조직이며, 이러한 점은 사망의 발생원인을 제공하기도 함과 동시에 사망원인을 밝히는 조사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군대의 경직성은 그 강압성과 결합되어 하급자의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급자의 반말로 이루어지는 명령을 일상화하며 나아가 어느 정도의 폭언과 열차려를 용인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러한 점이 직·간접적으로 사망의 발생원인을 제공하고, 나아가 조사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 <사례> 육군 제○○사단 일병 박○○ 사건 ■

사망자는 다른 병사보다 나이가 많아 입대한 상태에서 포대장 대위 구○○와 서무병 병장 이○○로부터 업무미숙에 대한 잣은 질책, 욕설, 구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누적으로 소속대 창고 내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사건 발생 후 대위 구○○는 ○○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으며, 병장 이○○는 위 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7백50만원을 자급 받았다.

위 사례는 군내의 지속적인 욕설, 구타로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른 전형적인 예이다. 1980년대 이후 군에서는 계속하여 구타근절, 폭언금지 등의 지침, 지시를 통하여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²⁰⁾ 위의 사례는 1995년에 발생한 사례로서 군조직이 상하가 엄격하고 강압적인 문화를 갖는 이상 욕설이나 구타는 근절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군대문화의 경직성으로 야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부대 지휘관의 지휘형태에 따라 부대 분위기가 좌우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진급을 앞두고 의욕에 차 있으며 하급자를 재촉하면서 부대를 관리하는 스타일의 사령관이 맡고 있는 부대가 있다면 그 부대 내에서는 조직의 말단에 있는 일·이등병에 이르기 까지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평소 부대관리의 책임이 거의 사단·함대급 사령관에게 주어져 있어, 사단장이 어떻게 부대관리를 하느냐는 부대분위기 자체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다.

20) 실제로 이러한 내용의 장관지시, 총장지시사항은 거의 매년 예하부대로 하달되고 있다.

■ <사례> 육군 제○○사단 이병 ○○○ 사건 ■

사망자는 위 제○○사단 사격장에서 총기로 자신의 목에 실탄을 발사하여 자살한 사건으로 최초 조사 당시 자살로 종결되었다. 현재까지도 최초 조사결과는 번복되지 않았으나, 당시 위 제○○사단에서 1년 동안 9건이나 자살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의혹으로 제기되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혹이 있었다기보다 1개 사단에서 1년 동안 자살사고가 9건이나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군의문사의 특성 중 한가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정확한 사건조사결과가 밝혀지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자살의 발생빈도가 부대 전체의 분위기와 적지 않은 연관이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는 사례이다.

* 군 폭행사고 발생원인과 자살의 원인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 범죄의 일반적인 틀을 기초로 세부적으로 구타/가혹행위와 자살/의문사 원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구타/가혹행위와 같은 폭행사고 원인은 군대 내에서 '사소한 시비, 사적 제재, 고참병 횡포, 상급자 구타, 음주행패, 개인감정, 기타'로 구분된다. 그런데 군대 내의 경우로 제한한다면, 계몽교육의 미흡, 음주통제책의 불충분, 폭행의식의 잔존, 신상파악의 미흡, 선임병의 횡포만연, 지휘통솔능력 부족, 안전을 위한 명목으로의 오용, 교정수단의 명목으로의 오용이 군대 내에서 폭행이 발생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계기로 작동한다. 이에 덧붙여 개인의 욕구불만과 부적응, 피구타자의 불성실한 복무태도 역시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9> 군 폭행사고의 발생원인

원 인	유 발 요 인
부대 환경적 요인	개 인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욕구좌절 및 불만 갈등요인에 의한 심리적 동요
	군 대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소한 시비, 사적제재, 고참병의 횡포 및 상급자의 폭행, 음주행패, 개인감정

자료 : 정진호, 「군폭행사고의 실태와 예방대책 연구」, 1994, p.49.

자살의 경우는 심리적 요인으로 병사들의 인내력과 자제력 부족, 권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군생활 조건에 대한 불만족에 따른 정신적 나약함, 사회와의 단절에 따른 피해의식이 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통제된 생활, 병영내 의사소통의 장애가 있다. 이러한 심리적, 환경적 요인들이 간부들의 병사들에 대한 불충분한 관리, 병영생활의 스트레스나 압박감, 불안감 등 "군 조직상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문제, 불합리한 군대 내의 제도와 관행의 개선시도의 불충분과 잔재와 같은 문제점들을 매개로 하여 자살이 발생한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0> 자살유발요인과 자살의 관계

원 인	유 발 요 인
부 대 관 계	복 무 염 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년병들의 군 특수 환경 부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과정 등에서 신체 및 정신상태 나약 - 훈련, 작업 등에 대한 극기심 결여 - 허약체질자 등 인내심 부족
	처 벌 우 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무이탈 등 사고 후 처벌이 두려워 업무수행 중 잘못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사 적 제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급자 및 선임병 횡포, 가혹행위, 구타 등 인격적 모독행위

자료 : '94사고분석 (육군본부, 1995), p.198.

※ 병 상호간 5대 금지사항

군의문사 사건을 분석하여 보면 자살이든 타살이든 그 죽음의 주된 원인이 5대 금지사항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사과정에서 사인을 규명하는 것과 함께 조사목표의 중요한 축이 되어야 함을 암시하는데, 조사관이 의문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한자의 사인과 5대 금지사항의 관련성을 입증해 낸다면 이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 유용한 근거와 자료가 될 것이다.

‘병 상호간 5대 금지사항’이란 선임병이 사적제재 목적으로 후임병을 ①집합시키는 행위, ②지시하는 행위, ③얼차려를 가하는 행위, ④군기교육을 시키는 행위, ⑤암기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집합행위’란 내무검사, 경계근무 등 지적사항 발생시 시정교육을 이유로 집합, 각종 교육훈련을 빙자한 집합 등을 의미하며, ‘지시행위’란 상급자가 개인적 심부름을 하급자에게 지시하는 행위이며, ‘얼차려/군기교육 행위’란 군의 규율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며, ‘암기 강요행위’는 병 서열, 군가 가사, 교육내용 등의 암기를 강요하는 행위이다.

다. 군조직의 폐쇄성

군의문사가 발생하는 거의 모든 장소는 군부대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합정 등의 내부이며 따라서 유족 등의 현장조사 등이 군사시설 또는 군사기밀의 보호라는 명목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유족의 현장 조사 뿐 아니라 언론의 보도 등 일반 공개 면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공개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장소적 특성과 조직성격상의 특성은 당연하게도 사망사고의 조사와 결론도출의 과정에서 폐쇄성을 놓을 수밖에 없다. 군의문사의 가장 큰 특성이자, 군대 내 사망사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사례는 유족이 현장과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떻게 제약되는 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 <사례> 육군 제○○사단 이병 김○○ 사건²¹⁾

2002년 1월 사망자의 유족들이 부대에서 사망원인에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과정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하자 당해 부대는 유가족에게 ‘보안업무시행규칙’상 민간인 사진촬영통제규정과 ‘유족집단행동 사례분석 및 대책’이라는 공문을 근거로 사건현장에 대한 일체의 사진촬영과 녹음을 거부하였다.

라. 높은 자살률

의학적으로 죽음은 자연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내인사와 인체 외부에서 사망의 원인이 발생한 외인사로 나뉘어지는데,²²⁾ 군 사망사고는 외인사 특히 자살률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사망원인 중 외인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현재 24만7천3백46건 중 2만8천8백74건(11.6%)²³⁾이고 다음의 통계가 수집된 1996년과 가까운 1997년에도 23만8천7백14건 가운데 3만2천4백59건(13.5%)에 지나지 않았다. 외인사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젊고 건강한 성인 남자 중심으로 군의 인력이 구성되어 있고 또한 군에서는 병에 걸려 죽는 경우보다, 사건으로 죽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긍할 수도 있는 결과이지만, 특히 높은 자살률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우리 국민 중 2000년에 자살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수는 6천4백60명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는 전체 사인 대비 2.6%, 외인사 대비 22.3%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표 11> 1996년도 1군 지역 장병의 사인별 현황²⁴⁾을 보면 전체 사인 중 외인사는 84.2%, 자살은 24.2%나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군 사망사고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라고 하겠다.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무

21) 이 사례는 천주교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cathrights.or.kr)에서 인용한 것이다.

22) 문국진, 『최신 법의학』, 일조각: 서울, 1994, 14-15pp., 윤중진, 『법의학』, 고려의학: 서울, 1993, 8-9pp.

23) 이하 한국인의 사망원인 통계는 보건신문사, 『보건연감』, 보건신문사: 서울, 2001, 926 - 956pp.를 참조하였다.

24) 이상한, 전계논문, 127p. <표 11>은 <표 7>의 70건 중, 외인사로 사망한 경우 등 59건만을 분류한 것이다.

려 10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군생활을 하는 도중 자살에 이를 만큼 정신적·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과, 둘째는 사인이 사실과 다르게 밝혀졌을 가능성이다. 어느 쪽이든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군 사망사고의 특성이라고 할 것이다.

<표 11> 1996년 1군 지역 장병의 사인별 현황

구 분	자살	타살	사건사	계
순상사	17	10	15	
	총기사고	14	7	1
	폭발사고	2	0	1
	교통사고	0	2	11
	추락사고	1	0	1
	둔력	0	1	1
질식사	5	0	4	
	의사	5	0	0
	의사	0	0	4
중독사	2	0	0	2
기 타	화재	0	0	1
	감전	0	0	3
	열사병	0	0	6
총 계	24(40.7%)	10(16.9%)	25(42.45%)	59(100%)

2. 군의문사 방지대책

군의문사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진행되어 사망원인을 밝히는 것과 그러한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사망자와 그 유족에게 적절한 대우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군대 내에서 유족이 의문을 갖는 죽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하겠다.

현실적으로 군대의 존재는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군의문사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군의문사 발생에 대한 방지책의 검토는

군대문화 전반, 나아가 한국사회의 문명화 정도를 검토하여야 하는 과제와 연결되는 주제일 수도 있다. 다음의 방안들도 모두 짧은 시간 내에 실현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우리 군과 관련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1) 병영의 개방화

군내 의문사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실현하기 용이하면서도 시급한 것은 군에 대한 개방성을 높이는 것이다. 사망원인과 동기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군대가 사회와 격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대, 중대 등으로 단위가 분할되어 관리되는 집단이 외부와 격리되었을 때, 집단 내부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은 어떠한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이러한 사정은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망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병영을 개방하여 외부 사회와 소통을 할 수 있다면, 다양한 사망원인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유족 등 관계인이 군대의 사정과 사망자의 생활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어 사망원인에 대하여 수긍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의무복무 중인 병이라고 하더라도 여가시간에 집이나 친구와 전화를 하는 것 등이 보장이 되어 있고, 별로 어렵지도 않은 일이다. 또한 부대나 함정별로 가족이나 부모를 초청하여 생활공간 등 시설을 살펴보고 시간을 함께 보내게하는 행사도 열리고 있고, 친지들의 면회는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가 더욱 더 개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군대와 사회가 격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군대 역시 사람이 생활하는 곳이며, 사람이 의당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률이 지켜져야 하는 곳이며, 사회와 연결된 곳이 되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군대는 군내에서 복무하고 있는 장병들의 생활의 겉모습 뿐만 아니라 그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공개하는 것을 꺼려서는 안될 것이

며, 나아가 군내의 사정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군사기밀이라는 변명으로 그려한 설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또한 군 관련자들 역시 군대를 사회와 떨어뜨려 격리된 조직으로 관리하려는 발상을 버려야 하며, 사회 역시 군생활을 하고 있는 70만 장병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를 가져야 할 것이다.

2)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군대문화의 개선

사실 군대란 국가권력 중 가장 큰 억압기제로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목적인 집단이며, 군사교육 역시 총포를 쏘고 목표를 점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군대문화’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억압적이고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명령과 수행이라는 체계는 다소 거칠고 강압적인 언행을 용인하게 만든다. 그동안 우리 군은 군내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얼차려에 대한 세세한 내용까지 규정한 지침을 제정하기도 하고, 가혹행위를 가한 자에 대한 엄정한 처리지침을 제정하기도 하는 등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²⁵⁾

많은 군 내 자살사고에서 자살동기로 거론되는 것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군 생활에 염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군대 역시 사람이 모여있는 사회이고, 많은 군인들에게는 직장이기도 하다. 어떤 곳이든 새로운 집단으로 진입하는 사람은 당연히 적응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하는 경우, 새로운 직장에 취직을 하는 경우 모두 적응을 위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또는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유독 군대에서만 적응하지 못하였다 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그 만큼 군대문화가 그 외의 사회가 다른 점이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25) 군내 폭행사고의 예방대책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군 폭행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초급간부소양교육, 장병정신교육강화,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교육 등을 예방책으로 주장하고 있다. 정의광, “군 폭행사고의 심리적·사회적 원인분석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78pp이하, 길진환, 전개논문, 54pp이하 등.

그러나, 군 조직 스스로가 강압적인 문화적 태도를 버리지 않는 이상, 군 조직 내 폭행, 폭언 등은 좀처럼 사라지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의 사례들은 자살사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적응으로 인한 사망에 관한 예들이다.²⁶⁾²⁷⁾

■ <사례> 육군 제○사단 이병 이○○ 사건 ■

평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이던 사망자는, 신병교육 시 별다른 말이 없고, 교육 내용을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식훈련도 따로 교육받고, 식사배변 등 단체 생활 적응을 잘 한 채로 신병교육을 마치고, 소속대로 전입을 와서도 계속하여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중 4번째로 투입되고 최초로 실탄을 휴대한 근무 중 철책초소 근무교대를 위하여 이동하다가 자신의 K-2 소총으로 턱 밑에 대고 실탄을 발사하여 자살하였다.

군대 내부의 경직되고, 억압적인 분위기는 상관에 의한 폭행과 억압적인 언사를 당연지사로 받아들이게 하고, 새로 진입하는 사람에게 힘든 적응을 거치게 하여 군대 밖과 다른 분위기를 만들게 된다. 군대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그 구성원에게 억압적이고 폭력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의문사 사건의 조사결과 폭행이 직접적인 자살동기가 된 것으로 밝혀지는 사건도 있고, 이미 위원회에서 조사된 몇몇 사건을 비롯하여 군의문사의 상당부분이 폭력적인 군대문화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6) 군 내 자살사고 예방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내무생활의 명랑화, 개방된 상담창구의 개설, 인성 검사제도의 시행, 군 기강 확립 및 사명감 고취 등을 예방책으로 거론하고 있다. 김경범, 전개논문, 60pp.이하, 여명호, “군 자살사고의 실태분석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67pp.이하.

27) 한편, 박호선, “군 적응장애 환자의 유발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은 군 적응장애로 입원한 294명과 대조군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회에 부적응한 경우와, 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경우 군 적응장애를 유발시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자살시도를 한 경우, 가족 중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군에 적응을 잘 못하여 군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환자들도 그 입대 전에는 군에 적응을 잘 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다.

| <사례> 육군 ○○○○사령부 이병 운○○ 사건 |

사망자는 전입 직후인 1988. 4. 21. 05:30경 소속대 ○○초소에서 병장 오○○와 함께 경계근무 중 병장으로부터 1백여미터 떨어진 보안등까지 왕복달리기 얼차려를 받던 중, 병장 오○○는 사망자가 돌아오지 않자 순찰 중이던 하사 김○○, 이병 손○○에게 병장 오○○이 사망자를 찾아보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06:10경 이병 손○○이 ○○초소로부터 1백30미터 떨어진 벚꽃나무 가지에서 사망자가 요대와 소총 멜빵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한 사건이다.

재조사결과, 병장 오○○이 사건 4일전 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사망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고, 사건 당시에도 “보안등을 끄러 보냈다.”고 진술하였던 최초조사와는 달리 병장 오○○이 사망자에게 왕복달리기 얼차려를 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사건 후 병장 오○○는 구타사실로 구속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0. 7.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되었다.

군의문사, 특히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군 외부의 사회와 다른 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 중 특히 억압적이고 경직된 문화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3) 군 관리자에게 필요한 생명존중의 인식

아직도 일부 군인들은 군내 사망사고를 전투력의 손실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군인의 죽음은 ‘전투력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으로만 사망사고를 대하게 되면, 사망사고는 의당 있을 수 있는 전투력 일부의 손실에 불과하고, 자살사고는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킨 개인의 반국가적인 행위로 파악될 수밖에 없다.

적어도 군을 관리하는 지휘관들은 자살을 하거나, 자신의 고의·증과실로 일어난 사건으로 죽은 사람에게까지 국가가 무슨 배려와 우대를 하여야 하느냐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될 것이다. 사람은 총기가 아니다. 특히 의무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군인들은 국가가 임시로 빌려온 것이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국가와

군은 짧지 않은 기간동안 군인들을 국가의 필요를 위해 일을 시키다가 처음 군대에 들어올 때의 모습으로 건강하게 가족과 사회로 돌려보내 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군대의 고위직을 맡은 사람일수록 생명을 존중하고 군에 맡겨진 자신의 소중함을 각인하고 병력을 관리하는 일에 임해야 한다.

군 사망사고에 대한 군의 방지노력과 투명한 조사는 위의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는 이상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군내의 사망사고를 줄이고, 유족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군 관리자뿐만 아니라 군대 전체의 구성원이 가져야 할 것이다.

4) 군 사법권의 독립

현행 군사법원법은 국방부 장관²⁸⁾, 각 군 참모총장²⁹⁾, 보통군사법원 설치된 부대의 사령관³⁰⁾ 등이 검찰사건사무를 지휘·감독할 뿐만 아니라 군사법원의 관할관으로서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감독하게 하고, 나아가 일정한 범위의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³¹⁾로써 판결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한 군사법원법의 입장은 군검찰제도와 군사법원제도를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하여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목적보다는 군인에 대한 형벌권을 지휘관에게 귀속시킴으로써 군의 질서를 유지하는 지휘권을 보장한다는 목적에

28)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국방부직활통합부대와 각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하고(군사법원법 제8조 제1항)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 장관으로 한다(제7조 제2항). 또한 국방부 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군참모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제38조).

29)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법원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각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으로서 그 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며(제8조 제2항), 각 군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자로서 예하부대 보통검찰부의 관할에 속하는 군 검찰사무를 통괄하며, 소속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제39조).

30)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장 또는 책임지휘관으로 하고(군사법원법 제7조 제3항), 그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며(제8조 제2항), 소관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제40조).

31) 관할관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여야 하며,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는데 이것이 관할관의 확인조치이다(군사법원법 제379조 제1항).

충실하고 있기 때문이다.³²⁾

의문사의 발생, 조사, 결과처리를 통한 군 사망사고의 방지라는 측면에서는 군사법원보다도 군검찰이 더욱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군의 검찰권은 각 군 총장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나, 보통군사법원과 그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의 사무지휘·감독권은 사단, 합대, 전투비행단급 부대의 사령관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부대 내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직접적·간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해당부대의 지휘관의 결심이 필요하다. 실제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부대의 지휘관으로서는 사망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부대 또는 부대 구성원이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어지는 것보다는 사망자가 자기 스스로의 문제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의 부대 또는 구성원은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로 인해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권한이 사령관에게 주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군검찰관의 직무상 상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령관의 의지에 따라 일선 부대의 사건처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은 군의문사의 발생방지라는 측면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 역시 의문사의 발생을 막기 위한 중요한 방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2) 군사법원법은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 재판관·검찰관 및 변호인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 기타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는 선언적 의미의 규정은 두고 있다(군사법원법 제21조).

| <사례> 해군 제○함대 하사 임○○ 사건 |

사망자는 초임 부사관으로서 함정의 구조, 근무관계, 직별, 내무생활 등 군생활에 대한 교육을 조금씩 숙지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입과 동시에 선임자들로부터 이러한 교육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교육받게 되어 이해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급자로부터 힐책과 꾸지람 등을 지속적으로 받아 오던 중, 상관인 하사 김○○, 상사 김○○ 등으로부터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심지어 다른 하사 김○○은 사망자가 속한 작전부의 사병들에게 사망자를 이른바 '왕따'를 시키도록 지시함으로써 결국 자존심이 강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사망자는 군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이를 비판하여 당해 함정에서 호출로 목을 매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문제는 사망자가 사망하기 몇 달 전에 해당부대 검찰부에서 위 하사 김○○와 상사 김○○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을 조사하였던 바가 있다는 점이다. 사후의 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사 김○○와 상사 김○○는 사망자에게 지속적으로 구타, 폭행, 폭언을 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지만, 위 피의사건의 조사 당시에는 경미한 정도의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위 두 피의자는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처분이 있고 난 뒤에도 계속하여 폭언·폭행이 가해졌고, 집단 따돌림도 계속되었으며 결국 사망자는 자살이 이르게 되었고, 현재 유족들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위 사례에서 검찰관이 사건처리에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였는지, 상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외압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최초 폭행사고의 조사로 보다 엄격한 처벌을 받았거나, 적어도 피해자를 다른 함정 또는 육상으로 다시 배치할 수만 있었더라도 사후적으로 보아 자살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행정적 책임인 징계책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사단, 합대, 전투비행단급 부대의 경우 그 장교와 사병에 대한 징계권한이 해당 지휘관에게 있고,³³⁾ 또한 각급 부대 징계위원회의 간사를 맡아

33)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관급장교이외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대하여는 사단장(여단장을 포함)

징계사건을 조사하고 이를 보고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일은 군검찰관이 맡고 있기 때문에 형사책임과 거의 구조가 동일하다.

군검찰관이 독립적으로 행사된다고 해서 군 사망사고의 발생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단기적으로는 군검찰관의 수사권과 징계권을 적절히 활용하여 군내의 사망사고의 원인과 동기유발을 최대로 줄이려는 노력은 기울여져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적어도 군 사망사고에 대하여는 각급 지휘관과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독립된 검찰관의 활동으로서 수사와 공소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진정 중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³⁴⁾

3. 군 사법제도 검토

1) 현행 군 수사기구 및 군 사법제도는 군대내 폭행 및 가혹행위자를 밝혀내고 처벌하는데 있어 그 능력과 의지 면에서 현저히 부족하다.

폭행 및 가혹행위, 나아가 그로 인한 죽음과 관련하여 피해자 가족 및 희생자 유가족들이 군 사법제도에 대해 갖는 불만의 핵심은 군 수사기관의 부족한 수사 의지와 결여된 수사능력이다. 특히 군의문사와 관련하여 희생자의 유가족들은 잘못된 현장보존조치 등 엉성한 초동수사로 인해 진상규명이 출발점에서부터

함한다), 전단사령관, 비행단장 및 이와 동등이상의 기관의 장이 징계권자이고, 연대장·함정장·전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의 장은 장관급장교외의 장교 및 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부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권자이다(군인사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제3호). 다만, 장교의 파면은 임용권자의, 준사관의 파면 및 장교의 강등의 경우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같은 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제2호).

34) 현재 군 사법권의 독립을 포함한 군사법원법의 개정 또는 군검찰권이나 군사재판권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는 군의문사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재판의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이덕우, 「군대 내 사망사고 처리의 개선방향」, 『군대 내 사망사고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서울, 2000., 이태희, 「군사법원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2000. 등 참고. 다만, 법적으로 군사법원법의 폐지나 군사법원의 폐지는 개헌을 필요로 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군사재판에 있어서 지휘관 또는 관할관의 지휘권이 강화되거나, 군 통수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군내에서는 큰 세력을 가지고 있어 이의 실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심지어는 군 통수권 강화를 위한 군사법원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까지 발표되고 있다(홍종설, 「군사재판제도의 실태분석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2000. 등).

실패하고 있다는 점에 강한 불만과 의혹을 나타내고 있다.

초동수사 단계에서 진실이 은폐되면 이후의 단계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는 군의문사 가족들로 구성된 '군의문사진상규명과 군 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의 요청으로 구성된 '국방부민원제기사망사고 특별조사단'이 여러 '의문사 사건'을 재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수사발표와 다른 결론이 내려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는 점(1백66건 중 2~3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한 군 사건 대부분의 경우 사인이 바뀌는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과거수사기록과는 사뭇 다른 조사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렇다면 이런 일은 왜 일어날까. 쉽게 말하면 군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할 능력도 의지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문제를 줄기차게 조사·연구해온 사람들의 한결같은 설명이다. 즉 ① 현재 군대내 사망사건에 대한 1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현병대는 그 수사능력(법의학적 지식)에서 한계가 있으며, ② 군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난 이후 유가족들은 의문점을 제기할 만한 그 어떠한 자료도 제공받지 못해 도대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③ 유가족의 의혹을 객관적·중립적으로 해명해 줄 만한 제3자의 조사활동 참여는 철저히 봉쇄되어 있다는 등의 지적을 하고 있다. 한 마디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는 처음부터 실종되고 있으며, 수사기록에 대한 철저한 비밀주의로 항의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한다는 얘기다.³⁵⁾ 일단 초동수사가 잘못되면 이후 그 수사결과를 뒤집기란 매우 어렵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군의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서 주된 초점은 일차적으로, 군 수사기구와 수사절차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점에 맞출 수밖에 없다.³⁶⁾

군의문사 문제는 한 국가의 인권상황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임에 틀림없다. 그런 점에서 최근 군사법원법의 개정을 통해 군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피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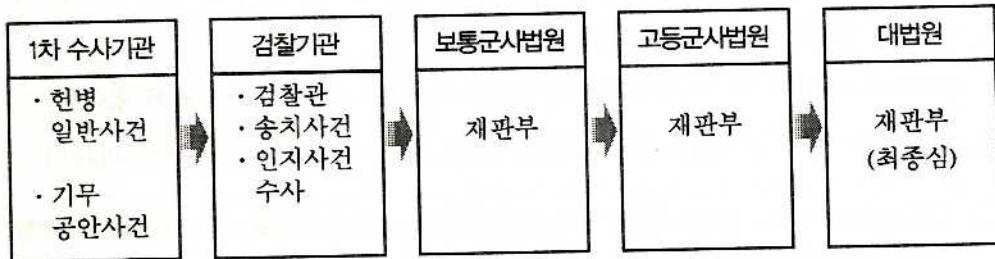
35) 천주교 인권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군대 내 사망사고의 경우 유가족들이 군 수사결과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한다.

36) 군 수사기관 개혁도 군 사법제도 전체의 개혁과 무관할 수 없으므로 군 의문사 문제를 다룰 때에도 군 사법제도 전체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들이 몇몇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다.

피고인의 권리가 강화된 것은 바람직하다. 기소된 군인들에게도 민간법정에 선 민간피고인에게 부여된 것과 똑같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그 정도의 변화만으로 현행 군사법제도의 문제점을 모두 고쳤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현행 군사법제도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교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현행 군사법원법에는 군수사기관의 의도된 직무 유기 및 문제은폐를 사전에 차단할 효과적인 수단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병영 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구타, 폭행과 그로 인한 상해 및 사망사고. 이들 악폐에 대처하자면 병영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법행위, 범죄 행위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수사하는 수사기관을 구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하겠다. 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구타, 폭행치사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제어하는데 그것만큼 효과적인 수단도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및 재판’을 보장할 군사법제도, 군인의 인권을 보장할 외부감시기구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

군대 내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수사기관에 의해 타살여부가 확인되어야 하고, 조사결과 타살의 의혹이 있다면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수사진행 중 범죄혐의자가 등장하면 그를 체포·구속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으면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기소된 피고인은 독립·공정한 심판절차를 거쳐 유·무죄를 판단 받는다. 여기까지의 과정이 모두 군사법제도에 포함된다.

<표 12> 사건처리 체계도



* 현병은 1990년대에 9종의 수사서류 양식과 41종의 수사행정 보관서류를 12종으로 대폭 간소화하였음

군사법기구는 크게 군수사기관 및 군재판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군수사기관에는 헌병과 소속된 군수사관과 기무사 수사관, 군검찰관이 포함되며, 군재판기구에는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구성된 군재판부가 있다. 군사법원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110조 및 군사법원법이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우리의 관심사는 우선 군수사기관에 있으므로 현행 군수사기관의 문제점에 논의를 집중해 보자.

(1)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특별사법기구로서의 군수사기관은 실체적 진실발견 보다는 지휘관의 지휘권을 확보해주는 일에 더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보니 자연 군수사기관들은 군기와 복무자세를 유지시켜 군인 각자에게 할당된 임무를 수행케 하려는 지휘관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관할관의 지휘를 받게 되므로 사실상 지휘관에게 종속되어 있다.

관할관은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장인 지휘관으로서 행정사무의 관장(제8조), 군검찰사무의 관장과 소속검찰관의 지휘감독(제40조), 심판관의 임명(제24조), 재판관의 지정(제25조), 재정신청사건의 처리(제303조),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권(제379조)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전 시기 그는 군검찰관의 임명권(1994. 1. 5. 법개정으로 현재는 원칙적으로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 구속영장의 발부권한(1999. 12. 28. 법개정으로 현재는 군판사가 발부)까지 갖고 있었다. 이 제도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을 때 국방부장관은 의견서에서 “입법권자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이행이라는 헌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사명을 수행하는 국군조직에 있어서 부대 지휘관을 전력의 유지와 극대화의 핵심적 요소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관할관제도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³⁷⁾ 국방부장관의 의견서는 부대 지휘관을 전력의 유지와 극대화의 핵심적 요소로만 파악하고 있지, 군인의 권리와 인권을 극대화할 핵심적 요소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37) 1995. 2. 23. 92헌바18.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심리하지 않았다.

(2) 일반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 경찰청법 제46조 2항), 군 수사관은 군 검찰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다. 그 대신 군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군사법원법 제45조).

경찰의 속원이 수사권 독립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랜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여럿 있다. 이중 이른바 시기상조론, 즉 경찰은 독립된 수사를 전개할 수 있을 만한 역량과 인권의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논리가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힘을 얻고 있는 형국인데, 군 수사관은 그러한 논란에서 비껴나 있는지 의문이다. 현재 군대내 사망사고의 1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헌병대의 역량(법의학적 지식 등)에 대해서는 회의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은 이미 지적했다. 일반 수사기관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수사관이 군 검찰관이 아니라 ‘관할관’인 군 지휘관의 수사지휘를 받는 것은 무슨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일찍이 미국식 헌병제도가 한국군 내부에 도입되었고 이것이 무비판적으로 이후로도 계속 유지되어온 결과 현행과 같은 체제가 고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군 수사기구 내에서의 군 검찰관의 지위와 역할 또한 문제이다. 군 검찰관은 국방부 소속의 군인이다. 군 검찰관은 당연히 국방부 소속이어야 하고 또한 군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눈에 띈다.

(4) 군 수사기관의 수사발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 군대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모든 자료는 군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어 유족들이 열람하는데 장애가 많으며 복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5) 군 수사기관이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유가족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

2) 외국의 입법례와 냉전이후 세계적으로 군민전환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군 수사기구 및 사법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1998년 3월 이탈리아 고등 군 검찰부장은 군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일종의 국제 공청회를 개최했다. 동 공청회는 이탈리아에서도 이른바 ‘군의문사’가 발생하고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군 사법제도에 대한 대중들의 비판이 높아 가는 시점에서 기획되었다. 이탈리아 군 검찰당국은 이탈리아 주재 각국 대사관을 상대로 군 사법제도에 대해 똑같은 질문을 던졌고, 각국 외교관들(주로 무관)이 그에 대해 답하는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공청회가 열릴 수 있었다.

그 보고서들을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국가 27개국 중 군사법원(군 사법제도)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와(오스트리아, 체코공화국, 독일, 일본, 리투아니아, 스웨덴,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민간법원과 군사법원이 섞여 있는 나라(헝가리,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불가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가 각각 8개국이고 독립군사법원을 두고 있는 나라가 11개국(캐나다, 한국, 덴마크, 영국, 이스라엘,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스위스, 미국, 아일랜드)이다.

즉 군대만을 따로 관할하는 군사법원을 설치하지 않는 나라에서부터 군사법원을 설치하되 그 법원을 민간법원에 통합하는 형태를 취하거나(네덜란드), 민간법원에 군인을 참여시키는 형태(헝가리) 등을 취하는 형가리. 그리고 우리처럼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독립된 법원이나 조직을 군부대내에 별도로 설치하고 민간법원과 구분하는 특별군사법원형 등 3가지 모델의 군사법원제도가 존재한다.

단순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군대내 폭행, 구타사고 및 이로 인한 자살 및 군의문사 발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 사법제도 개선논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냉전이 끝나면서 시대는 바뀌었는데 군사 관련 시스템은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9·11 테러가 그러한 저항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군사제도의 변화는 시대적 대세로 보아야 한다. 군 사법제도 개혁 논의는 넓은 의미에서의 군사제도의 개혁논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넓게 보면 ‘군사국가에서 민간국가로의 이행’, 즉 군사자원을 민간용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의 한 내용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 넓은 시각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가야 한다.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군 내부의 범죄를 전시와 평시, 그리고 국내 범죄와 국외 파병 군대 내에서의 범죄로 구분하여 전시가 아닌 평시, 국내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검찰·경찰이 수사를 맡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을 참고하여 최근 국내에서도 평시에는 군 형사사법에 있어 지휘권의 영향을 배제하거나 아니면 민간법원이 군사재판을 담당하게 하는 등의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외국법제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외국법제를 단순 비교하는 일이 아니고, 제도의 의미, 앞으로의 전망을 읽는 일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외국의 군 사법제도를 검토해보면 미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각 국은 군 수사기구 및 군 사법절차에서 점차 민간검찰과 민간법원의 주도권 혹은 통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낼 수 있다.

유일한 예외가 미국이다. 냉전체제 이후 미국은 유일 강대국으로서 거의 전 세계에게 미군을 파병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한 현실이 독립적인 군 수사기구 및 군 사법제도의 존재를 정당화하고 있다. 미국 같은 나라가 군대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재판권을 민간기구에게 맡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세계경찰로서의 힘을 잃어버린 영국과 프랑스는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전통에 기초하여 마련된 군 사법제도를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일상적으로 해외에 군사력을 파병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현재와 같은 군 수사기구, 군 사법기구를 유지해야 할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일부에서는 그 나라들의 군 체계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한다.

군 체계가 어떻게 다르다는 것인가. 군 체계가 다른 게 아니고 50년 동안 대한 민국을 지배해온 강력한 안보논리, 군사기밀을 보호한다는 논리 때문에 그런 식의 반론이 통하고 실제로 먹혀들어 갈 뿐이다. 군대에서의 인권을 얘기하는 것이 사치였고, 모든 게 지휘권으로 정당화되던 시절의 논리를 우리가 답습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아래에서는 ‘이탈리아 공청회’에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자.

(1) 군사법원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

오스트리아 : 몇몇 전형적인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군사 형법이 있기는 하나 군의 사법관할권은 없다. 시민권, 인권은 군대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며, 군인은 민간법원의 형사절차에 따라 처벌된다. 즉 평시에는 군사재판 자체가 없다.

체코,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스웨덴 : 군사재판제도 자체가 없다. 독일은 군내부에 징계법원만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군대 내에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한다. 전시에 군사재판제도가 성립될 수는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고, 성립되더라도 국방부가 아니라 법무부의 관할에 속하게 된다.

일본 : 일본헌법 제9조는 군대의 설립을 부정. 1954년 이른바 자위대가 설치되었으나 군사재판제도 자체가 없다.

(2) 민간법원과 군사법원제도가 혼합되어 있는 나라들

핀란드 : 군사법원은 없다. 그러나 군 사법절차는 존재. 군대내의 범죄행위를 재판하기 위한 재판부에 두 명의 군장교가 포함된다. 전시에는 군사재판에 의해 처리된다.

프랑스 : 군 재판권은 지방법원의 특별부에 의해 행사된다. 그 특별부가 복무 중에 일어나는 군사상의 범죄행위 및 통상의 범죄행위를 재판하는 권한을 가진다. 4권의 군형법전이 존재하고 제1, 2, 4권은 군 형사소송절차를 제3권은 군 범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해외주둔 부대에서는 군사법정이 열릴 수 있다.

네덜란드 : 군사재판부는 민간재판부에 통합되어 있다. 군사부는 3명으로 구성하고 이중 전문법조인 자격을 가진 군 측 인사가 1인이 포함된다. 다른 2명의 판사는 민간법원소속이다.

노르웨이 : 군사법원은 있다. 그러나 군법의 내용은 징계에 한정하고 허가 없